

의안번호	2203570
의 퇴 인	김민전 의원
회 답 일	2024.09.09.
추계번호	24C347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17조 (출연금 등)	(제2항)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의무규정
		(제3항) 정부는 치과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 보조 및 지원의 기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¹⁾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조(목적) 안 제17조(출연금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국립대학치과병원에 대한 기존 출연금 및 보조금 규정 외에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

1) 개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사무 및 인력, 예산 등은 이관될 수 있으나, 법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업무량 및 인력의 증원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원의 기준·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지출규모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 현행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법 제17조제1항),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한 ‘보조’와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경비를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정부 보조’에 대하여 규정(법 제19조제2항)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에 총 111,369백만원(2024년 예산기준)을 편성²⁾

[표 1]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교육부) 예산 산출세부내역

예 산	산출내역
사업출연금(350-02) 105,019,000천원	가. 시설확충 및 보수 (56,262,000천원) 나. 장비구입 및 교체 (31,085,000천원) 다. 정책사업 (17,672,000천원) ³⁾
민간경상보조(320-01) 6,350,000천원	정책사업 (6,350,000천원) ⁴⁾

자료: 교육부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 개정안에 따라 ‘치과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될 경우 ‘기존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우선 충당되던 운영비 등’과 ‘치과병원의 사업’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이 실시될 수 있어 정부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원이 실시될 구체적 내역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을 밝히고 있는 바, 관련 사업 지원 등⁵⁾이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

2) 보건복지부에서도 771억원(2022년 기준)을 국립대병원에 지원('23.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임상교육훈련센터건립비

4)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

5)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2023.10.)’에서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교수 정원 대폭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한국형 ARPA-H 필수의료 장기투자, 진료-연구 병행 지원, 산학협력단 설치 등 R&D 투자’, ‘중증·응급 보상 강화,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 확대 등 공공정책수가’, ‘노후 의료 시설·장비 개선 지원 확대,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 등 인프라 첨단화’와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립대병원 중심 인력·병상 즉각 대응체계 확립 및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 강화로 대응 기반 확

- 참고로 '24년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개혁 분야별 투자계획(안) 중 권역 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을 수도권 대형병원과 동일 수준의 선도적 지역병원으로 양성하는데 1,836억원('25년),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및 특화 연구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하여 128억원('25년), 국립대병원 시설·장비를 위한 829억원('25년, 교육부)이 계획된 바 있으나⁶⁾ 해당 실행방안이 1차 계획안이고 '24년 말과 '25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므로 향후 사업 증가 및 재정 투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에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충 등을 발표한바 있음
 6)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보건복지부, 2024.08.30.) 참조